〈부록〉 독일의 조세기본법의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적용범위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국제조약의 우위

제2장 조세에 관한 개념규정
제3조 조세, 조세관련 부대급부
제4조 법률
제5조 재량
제6조 관청, 과세관청
제7조 공무원
제8조 주소
제9조 거소
제10조 경영진 본부
제11조 법인 등의 소재지
제12조 사업소 고정사업장
제13조 상시 대리인
제14조 영리사업체
제15조 친족

제3장 과세관청의 관할, 관할 과세관청
제16조 물적 관할

제17조 지역적 관할
제18조 특별과세항목별 관할 과세관청
제19조 자연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세
제20조 법인, 개인연합체, 펀드에 대한 조세
제20a조 건설용역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조세
제21조 부가가치세
제22조 물세
제23조 수출입 관련 조세 및 소비세
제24조 대체 관할 과세관청
제25조 지역적 관할의 중복
제26조 관할의 변경
제27조 관할의 합의
제28조 관할권의 분쟁
제29조 지연으로 인한 위험

제4장 납세자 개인정보보호
제30조 납세자 개인정보보호
제30a조 은행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제31조 과세근거의 통지
제31a조 불법취업 및 남용에 대한 단속을 위한 통지
제31b조 돈세탁 단속을 위한 통지

제5장 공무원 책임의 제한
제32조 공무원 책임의 제한

제2편 조세채무법

제1장 납세의무자

제33조 납세의무자
제34조 법정대리인 및 재산관리인의 의무
제35조 사용권 소유자의 의무
제36조 대리권의 소멸

제2장 조세채무관계
제37조 조세채무관계로부터의 권리
제38조 조세채무관계로부터의 권리의 발생
제39조 귀속
제40조 위법 및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제41조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
제42조 법적인 활용 가능성의 남용
제43조 조세채무자, 조세환급채권자
제44조 연대채무자
제45조 포괄적 권리승계
제46조 권리양도, 담보, 압류
제47조 소멸
제48조 제3자에 의한 급부, 제3자의 책임귀속
제49조 실종
제50조 소비세의 소멸 및 무조건화, 조건부 소비세 채무의 이전

제3장 세금우대 수혜대상 행위 목적
제51조 통칙
제52조 공익 목적
제53조 자선 목적
제54조 종교 목적
제55조 무자아성
제56조 세금우대 대상 단일목적 수행성

제57조 직접성
제58조 세금우대 수혜관련 무해한 행위
제59조 세금우대의 요건
제60조 정관의 충족요건
제61조 정관에 의한 재산구속
제62조 정관에 의한 재산구속의 예외 (삭제)
제63조 실 경영진에 대한 요건
제64조 조세 의무가 있는 경제적 사업체의 운영
제65조 목적 사업
제66조 사회복지사업
제67조 병원
제67a조 스포츠 행사
제68조 개개의 목적사업

제4장 귀속책임
제69조 대리인의 귀속책임
제70조 피대리인의 귀속책임
제71조 탈세자와 조세범의 귀속책임
제72조 계좌 진실성의 준수 의무위반에 대한 귀속책임
제73조 연결납세에서의 귀속책임
제74조 재화 소유자의 귀속책임
제75조 사업 인수자의 귀속책임
제76조 사물적 귀속책임 물적담보
제77조 인내 의무 압류수용 의무

제3편 절차규정 통칙

제1장 절차의 제 원칙

제1절 절차에의 관여
제78조 관계인
제79조 행위능력
제80조 대리인 및 보좌인
제81조 공권력에 의한 대리인의 임명

제2절 공무원 및 기타 인물의 배제 및 거부
제82조 절차관여 배제대상 인물
제83조 편견의 우려
제84조 위원회의 부적 위원 참여에 대한 거부

제3절 과세의 제원칙, 증빙자료
제1관 통칙
제85조 과세의 제원칙
제86조 절차의 개시
제87조 관청어
제87a조 전자신고
제88조 조사의 원칙
제88a조 보호 대상 정보의 수집
제89조 조언, 조세정보
제90조 관계인의 협력의무
제91조 관계인의 의사청취
제92조 증빙자료

제2관 정보 및 감정인의 감정에 의한 입증
제93조 관계인 및 기타 인물의 정보제출 의무
제93a조 일반적 통지 의무
제93b조 계좌정보의 자동적 호출

제94조 선서에 입각한 심문
제95조 선서에 입각한 보장
제96조 감정인의 개입

제3관 증명서 및 시각적 확인을 통한 입증
제97조 증명서의 제출
제98조 시각적 확인
제99조 토지 및 공간에의 진입
제100조 고가물의 제출

제4관 정보 및 자료제출 거부권
제101조 친족의 정보 제공 거부권 및 선서 거부권
제102조 특정 직업상 비밀의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거부권
제103조 범죄 또는 질서위반에 대한 소추 우려가 있는 경우의 정보 제공 거부권
제104조 감정서 및 증명서 제출의 거부
제105조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묵비 의무에 대비 정보 제공 의무 및 자료제출 의무의 관계
제106조 공익 침해의 경우 정보 제공 의무 및 자료제출 의무의 제한

제5관 정보 제공 의무자 및 감정인에 대한 보상
제107조 정보 제공 의무자 및 감정인에 대한 보상

제4절 기간, 기한, 일정, 원상복귀
제108조 기간 및 기한
제109조 기간의 연장
제110조 원상복귀

제5절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

제111조 행정공조 의무
제112조 행정공조 요건 및 한계
제113조 관청의 선택
제114조 행정공조의 실시
제115조 행정공조의 비용
제116조 조세범의 고발
제117조 조세사안에 있어 국가간의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

제2장 행정행위
제118조 행정행위의 개념
제119조 행정행위의 명확성과 형식
제120조 행정행위의 부대적 규정
제121조 행정행위의 이유
제122조 행정행위의 고지
제123조 수령대리인의 선임
제124조 행정행위의 유효
제125조 행정행위의 무효
제126조 절차상 하자 및 형식상 하자의 보완
제127조 절차상 하자 및 형식상 하자의 효과
제128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129조 행정행위시의 명백한 잘못
제130조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제131조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
제132조 권리구제에 있어서 취소, 철회, 폐지 및 변경
제133조 증명서 및 물건의 반환

제4편 과세의 부과 실시

제1장 납세의무자의 파악
제1절 개인 및 사업장 조사
제134조 개인 및 사업장 조사
제135조 개인 및 사업장 조사시 협력의무
제136조 개인실태조사를 위한 변경사항 통지

제2절 신고의무
제137조 법인, 인적조항, 기금의 과세상 파악
제138조 영리활동에 대한 신고
제139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신고

제3절 신원확인증명정보
제139a조 신원확인증명정보
제139b조 신원확인증명(ID)번호
제139c조 사업적자 신원확인증명(ID)번호
제139d조 권한부여

제2장 협력의무
제1절 기장 및 기록의 작성
제140조 타 법률에 의한 기장 및 기록 의무
제141조 특정 납세의무자의 기장 의무
제142조 농림업자에 대한 규정
제143조 상품구매의 기록
제144조 상품판매의 기록
제145조 기장 및 기록에 대한 일반적 요건
제146조 기장 및 기록에 대한 규정

제147조 자료의 보존에 대한 규정
제148조 의무의 경감의 승인

제2절 세무신고
제149조 신고의무자
제150조 세무신고의 형식 및 내용
제151조 관공서에서의 세무신고 및 작성
제152조 신고지연가산세
제153조 세무신고서의 정정

제3절 계좌의 진실성
제154조 계좌의 진실성

제3장 확인 절차와 확인고지 절차
제1절 세액확정
제1관 통칙
제155조 세액확정
제156조 세액확정의 포기
제157조 납세고지서의 형식 및 내용
제158조 기장의 증거력
제159조 신탁관계의 증명
제160조 채권자 및 환급금 수령자의 지명
제161조 재고현황 기록에서 누락된 물품수량
제162조 과세자료표준의 추계
제163조 정상참작에 의한 조세의 특별 감면
제164조 사후조사를 유보한 세액의 확정
제165조 잠정적 세액확정, 세액확정의 연기
제166조 세액확정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제167조 세무신고, 과세표시 및 과세인장의 사용
제168조 세무신고의 효력

제2관 세액확정의 시효기간
제169조 세액확정 시효기간
제170조 세액확정 시효기간
제171조 집행 시효의 정지

제3관 확정력
제172조 납세고지서의 취소 및 변경
제173조 새로운 정황 또는 증거물에 근거한 납세고지서의 취소 또는 변경
제174조 쟁점이 되는 세액 확정
제175조 기타의 경우에 납세고지서의 취소 또는 변경
제175a조 상호합의의 실행
제176조 납세고지서의 취소 및 변경에 대한 법적 신뢰성 보호
제177조 법적오류의 정정

제4관 비용
제178조 관세관청의 특별 업무 관련 비용
제178조a 세무관청의 특별 업무 관련 비용

제2절 과세기초의 별도 확인고지 및 과세표준의 확정
제1관 별도 확인고지
제179조 과세기초의 확인
제180조 과세기초의 별도 확인고지
제181조 별도 확인고지, 확인기한, 신고의무에 관한 절차규정
제182조 별도 확인고지의 효력
제183조 단일 확인통보의 경우 수령대리인

제2관 과세표준의 확정
제184조 과세표준의 확정

제3절 분할 및 배분
제185조 통칙의 적용
제186조 관계인
제187조 서류의 열람
제188조 분할결정
제189조 분할의 변경
제190조 배분절차

제4절 귀속책임
제191조 귀속책임고지서, 압류수용고지서
제192조 계약에 의한 귀속책임

제3장 세무조사
제1절 통칙
제193조 세무조사의 허용
제194조 세무조사의 물적 범위
제195조 관할
제196조 조사명령
제197조 조사명령의 고지
제198조 증명의무, 세무조사의 개시
제199조 조사의 원칙
제200조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
제201조 종결협의
제202조 조사보고의 내용 및 고지
제203조 간이세무조사

제2절 세무조사에 기초한 구속 확언
제204조 구속 확언의 요건
제205조 구속 확언의 형식
제206조 구속력
제207조 구속 확언의 실효, 취소 및 변경

제5장 조세사찰(관세 사찰)
제208조 조세사찰(관세 사찰)

제6장 특별한 경우의 조세감독
제209조 조세감독의 대상
제210조 세무관청의 권한
제211조 감독을 받는 자의 의무
제212조 시행규정
제213조 특별감독 조치
제214조 세무대리업무 수임자
제215조 감독수단으로서의 물권의 확보
제216조 연방소유권으로의 이전
제217조 조세보조자

제5편 징수절차

제1장 조세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 납부기한 및 소멸
제1절 조세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 및 납부기한
제218조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
제219조 귀속책임고지서에 기초한 납부독촉
제220조 납부기한
제221조 다른 납부기한의 지정

제222조 유예
제223조 납부의 연기

제2절 납부, 상계, 사면
제224조 납부의 장소, 납부일
제224a조 납부에 대신한 미술품의 인도
제225조 조세채무 상환의 순서
제226조 상계
제227조 사면

제3절 지급 시효
제228조 소멸시효의 대상, 소멸시효기간
제229조 소멸시효의 개시
제230조 소멸시효의 정지
제231조 소멸시효의 중단
제232조 소멸시효의 효력

제2장 이자, 납부연체가산금
제1절 이자
제233조 원칙
제233a조 추가과세액 청구 및 조세환급금에 대한 이자
제234조 유예에 대한 이자
제235조 탈세액에 대한 이자
제236조 조세환급액에 대한 소송이자
제237조 강제집행정지의 경우의 이자
제238조 이자액 및 이자계산
제239조 이자의 확정

제2절 납부연체가산금
제240조 납부연체가산금

제3장 담보의 제공
제241조 담보의 종류
제242조 지불수단 공탁의 효력
제243조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제244조 적절한 납세보증
제245조 다른 유가물에 의한 담보제공
제246조 담보물 접수가치
제247조 담보의 대체
제248조 보충의무

제6편 강제집행

제1장 통칙
제249조 강제집행 관청
제250조 강제집행 신청
제251조 강제집행 가능 행정행위
제252조 강제집행 채권자
제253조 강제집행 채무자
제254조 강제집행 개시요건
제255조 공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제256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제257조 강제집행의 정지 및 제한
제258조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또는 일시 제한

제2장 금전적 채권으로 인한 강제집행

제1절 통칙
제259조 경고
제260조 채무원인의 기재
제261조 중지
제262조 제3자의 권리
제263조 배우자에 대한 강제집행
제264조 용익권자에 대한 강제집행
제265조 상속인에 대한 강제집행
제266조 기타 유한책임의 경우
제267조 권리능력 없는 인적조합에 대한 집행절차

제2절 연대채무의 배분
제268조 원칙
제269조 신청
제270조 배분의 일반 기준
제271조 체납 재산세액에 대한 배분 기준
제272조 체납 예납세액에 대한 배분 기준
제273조 추가 과세액에 대한 배분 기준
제274조 특별배분 기준
제275조 절삭계산
제276조 체납세액, 강제집행 개시
제277조 강제집행
제278조 강제집행의 제한
제279조 배분고지서의 형식 및 내용
제280조 배분고지서의 변경

제3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281조 압류
제282조 압류의 효력
제283조 차압매물 보증보장 요구의 배제
제284조 법정 선서에 대신하는 자기보증

제2관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제285조 집행관
제286조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제287조 집행관의 권한
제288조 증인의 입회
제289조 집행시간
제290조 집행관의 요구 및 통지
제291조 기록부
제292조 압류의 회피
제293조 제3자의 압류권 및 우선권
제294조 미수확 과실의 압류
제295조 물건의 압류금지
제296조 처분
제297조 처분의 정지
제298조 경매
제299조 낙찰
제300조 최저경매가액
제301조 경매의 정지
제302조 유가증권
제303조 기명증권
제304조 미수확 과실의 공매
제305조 특별한 경우의 처분
제306조 항공기의 부품에 대한 강제집행

제307조 연결압류
제308조 중복압류시의 처분

제3관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309조 금전적 채권의 압류
제310조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압류
제311조 선박저당권 또는 항공기등록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압류
제312조 배서할 수 있는 증권의 채권압류
제313조 지속적인 수입의 압류
제314조 매각처분
제315조 매각처분의 효력
제316조 제3채무자의 의견서 제출의무
제317조 처분의 다른 방법
제318조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의 청구권
제319조 채권의 압류금지
제320조 채권의 중복압류
제321조 기타 재산에 대한 집행

제4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22조 절차
제323조 권리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압류
제324조 물적 압류
제325조 물적 압류의 취소
제326조 인적 압류

제6절 담보의 처분

제327조 담보의 처분

제3장 금전적 채권 이외의 것으로 인한 강제집행
제1절 행위, 인내 또는 부작위로 인한 강제집행
제328조 강제수단
제329조 강제금 과태료
제330조 대리집행
제331조 직접강제
제332조 강제수단의 경고
제333조 강제수단의 확정
제334조 대체강제수단으로서의 구속
제335조 강제절차의 종료

제2절 담보의 강제
제336조 담보의 강제

제4장 비용
제337조 집행비용
제338조 수수료의 종류
제339조 압류수수료
제340조 압수수수료
제341조 처분수수료
제342조 2인 이상의 채무자
제343조 (삭제)
제344조 기타 비용경비
제345조 여비 및 비용변상
제346조 취급오류, 확정기간

제7편 행정적 권리구제절차

제1장 권리구제의 허용
제347조 이의신청의 성립
제348조 이의신청의 배제
제349조 (삭제)
제350조 소원
제351조 타 행정행위의 구속력
제352조 단일 확인 고지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권
제353조 권리 승계인의 이의제기 신청권
제354조 이의신청의 포기

제2장 절차규정
제355조 이의신청의 시한
제356조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
제357조 이의신청의 제출
제358조 적법요건의 심사
제359조 관계인
제360조 절차에의 참가
제361조 집행의 정지
제362조 이의신청의 취하
제363조 절차의 정지
제364조 과세근거문서의 통지
제364a조 물적 및 법적 상황의 진술
제346b조 시한설정
제365조 절차규정의 적용
제3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형식과 내용
제36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368조 (삭제)

제8편 형사법적 규정 및 과태료벌금규정, 형사절차 및 과태료벌금절차

제1장 형사법적 규정
제369조 조세형사범
제370조 탈세
제370a조 (삭제)
제371조 탈세의 자진신고
제372조 수출입 금지의 위반
제373조 직업적, 폭력적 및 집단적 밀수
제374조 조세범칙범
제375조 부수효과
제376조 소추시효의 중단

제2장 과태료 벌금규정
제377조 조세질서 위반
제378조 과실에 의한 조세범
제379조 조세위해 행위
제380조 원천징수조세 위해행위
제381조 소비세 위해행위
제382조 수출입관련조세 위해행위
제383조 조세환급권 및 환급보상권의 불법취득
제383a조 제139a조의 신원확인정보의 부당한 사용
제384조 소추권의 시효

제3장 형사소송절차
제1절 통칙

제385조 절차규정의 적용
제386조 조세범에 대한 세무관청의 관할
제387조 물적 관할권을 가지는 세무관청
제388조 지역적 관할권을 가지는 세무관청
제389조 관련 형사사건
제390조 관할권의 중복
제391조 관할 법원
제392조 변호
제393조 형사법 절차와 조세법 절차의 관계
제394조 소유권의 이전
제395조 세무관청의 서류열람
제396조 절차의 정지

제2절 조사절차
제1관 통칙
제397조 형사절차의 개시
제398조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절차의 종결

제2관 조세형사범에 대한 세무관청의 조사절차
제399조 세무관청의 권리 및 의무
제400조 약식 형사처벌명령에 대한 사면처분 신청
제401조 독립적 조사절차에 있어서 부수적 결과처분 허용 신청

제3관 검찰청의 조사절차에 있어서 세무관청의 지위
제402조 세무관청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제403조 세무관청의 관여

제4관 조세사찰 및 관세사찰

제404조 조세사찰 및 관세사찰

제5관 증인 및 감정인의 보상
제405조 증인 및 감정인의 보상

제3절 재판 절차
제406조 약식 형사처벌 절차 및 독립적 절차에 있어서 세무관청의 협조
제407조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관청의 관여

제4절 형사소송절차 비용
제408조 형사소송절차 비용

제4장 과태료 벌금절차
제409조 관할 행정관청
제410조 과태료벌금 절차를 위한 보충규정
제411조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장부검사사에 대한 과태료벌금 절차
제412조 송달, 강제집행, 비용

제 9편 종결규정
제413조 기본권의 제한
제414조 (폐지)
제415조 (삭제)